

1964년 민권법 제6편에 따른 귀하의 권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고속수송체계 구역(San Francisco Bay Area Rapid Transit District, BART)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6편, 연방도로국(FHWA), 해당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장애를 근거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혜택에 참여하는 데 배제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12898은 소수 민족 및 저소득층의 환경 정의를 다룹니다. 대통령 행정 명령 13166은 영어 능력에 제한이 있는 개인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룹니다.

BART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서 배제 혹은 혜택이 거부되었거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연령 또는 장애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민권실(Office of Civil Rights, OCR)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BART의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제6편 불만을 제기하려면 다음 주소로 요청서를 제출하십시오.

San Francisco Bay Area Rapid Transit District (BART)

ATTN: Office of Civil Rights

2150 Webster St, Suite #0414

Oakland, CA 94612

(510) 874-7333 • 팩스 (510) 464-7587

officeofcivilrights@bart.gov

불만 제기 양식은 BART 웹사이트 www.bart.gov/titlevi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6편(Title VI)은 법입니다.



연방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